#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

제정 2024. 1 . 23.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민국농구협회가 체육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체육인 인권침해 행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인권"이란「대한민국헌법」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- 2. "체육단체"는 다음과 같다.
- 가. 대한민국농구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
- 나. 전국규모연맹체,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종목단체(이하 "관계단체"라 한다)
- 3. "체육인"은 다음과 같다.
- 가. 협회 및 관계단체에 등록된 선수, 지도자, 심판, 선수관리담당자(이하 "경기인") 및 동호인 등
- 나. 협회 및 관계단체(이하 "체육단체"라 한다)의 임.직원
- 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적용한다.
- **제4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**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수립 및 정보공개) ① 협회는 매년 체육인 인권보호

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- 1. 체육인 인권보호 기본방향
- 2. 체육인 인권보호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
- 3. 타 기관과의 협력사항
- 4.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협회는 인권보호 계획 및 그 이행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,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협회 관계단체는 이 규정 및 체육회 인권보호 계획을 준용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스포츠인권의 날) 협회는 스포츠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인권 중심 환경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에 노력한다.

# 제2장 체육인 인권침해 대응

- **제7조(체육인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)** ① 체육인은 다른 체육인의 인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② 체육단체는 체육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③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    - 1.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   - 2. 지속 ·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
    - 3.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   - 4.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

- 5.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
- 6.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,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
- 7.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8.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 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- 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10. 피해자, 신고자에게 협박, 회유 등 2차 가해를 하는 행위
- 11.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화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
- 제8조(인권침해 피해의 신고) ① 체육인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체육인이 인권침해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은폐하거나 신고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9조(피해자·신고자 보호 및 비밀유지) ① 체육단체는 피해자 및 신고자가 협박, 회유 등 2차 가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.
  -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치요구가 있을 시 피신고자의 직위해제(직원), 직무정지(임원), 물리적 공간 분리 등을 조치할 수 있다. 위와 같은 조치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물리적 공간 분리를 요청하였을 시 분리조치 등을 즉시 이행할 수 있다.
  - ③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 · 증언하거나

#### 「대한민국농구협회」

자료를 제공한 사람(이하 "신고자 등"이라 한다)에 대해 인권침해 신고를 이유 로 다음 각 호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.

- 1. 파면, 해임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
- 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
- 3.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- 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- 5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
- 6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
- 7. 제1호에서 제6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
- ④ 체육단체는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  - 1. 피해자·신고자 등의 성명·사진·주민등록번호·전화번호·주소·근무처등 인적사항
  - 2. 피해자·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
  - 3. 그밖에 신고와 관련된 비밀
- ⑤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체육단체 및 체육인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.
-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는 스포츠윤리센터 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0조(조치 및 징계)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제조치 나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재발방지) ①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체육단체는 과거 인권침해사례 및 대응결과 등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협회는 협회 관계단체에 인권침해 재발방지 계획 및 이행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체육인 인권 존중 기반 조성

- 제12조(인권친화적 훈련환경 조성) ① 체육단체는 정기적으로 소속 경기인의 훈련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실시, 상담일지 작성 등 훈련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체육단체는 체육인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람 또는 체육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.
  - ③ 협회는 협회의 개선요구, 시정조치 요구,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협회 관계단체에 대해 예산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.
  - 제13조(훈련지침) ① 체육단체는 소속 경기인의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지침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단체장은 훈련참여자의 휴식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며,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훈련 환경을 조성한다.
  - 2. 단체장은 합숙훈련 진행 시 훈련 참여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.
  - ② 훈련 참여자는 제1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소속 단체장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
- **제14조(대회운영 지침)** ① 체육단체는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회운영 지침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단체장은 대회 기간 중 참여자의 휴식시간을 지정하여 휴식권을 보장한다.
- 2. 단체장은 19세 이하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 운영 시 주중 대회를 지양하며, 주말 대회 확대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한다.
- 3. 단체장은 인권교육을 통해 소속 체육인에게 인권침해 방지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.
- ② 대회 참여 선수는 제1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장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체육단체는 전국단위대회 개최 시 대회참여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.
- 제15조(체육인 인권교육) ①「국민체육진홍법 시행규칙」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대상은 매년 스포츠윤리센터가 제공하는 체육인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한다.
- ② 체육단체는 소속된 체육인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(2024. 1. 23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(2024. 1. 23.)부터 시행한다.